

2026년도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세부과제 수행기관 추가모집 공고

2026년도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세부과제 수행기관
추가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6월 23일

한국한의학진흥원장

목 차

I. 공고 개요	1
II. 신청서 제출 및 방법	6
III. 선정방식 및 기타사항	7

※ 별첨: 제안요청서(제출서류 양식 포함) 1부

□ 공고 개요

- (목적) 한의약 해외수출을 통한 한의약 글로벌 확산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
 - * 「의료해외진출법」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·제11조 및 제5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('26년~'30년) 연계한 지원 사업 수행
- (공고명) 2026년도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 세부과제 수행기관 추가모집
- (공고기간) '26.6.23.(화) ~ '26.7.7.(화) 10:00
- (지원방법) 신청인(대표 또는 기관장)이 사업신청서를 포함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제출
 - * 6p '신청서 제출 및 방법' 참조

□ 주요 내용

- (지원과제) 총 1개

세부과제명	과업내용	이행사항	지원 기간
①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	- 해외 수출을 희망하거나 추진 중인 국내 한의약 제품(한의약품, 한의 의료기기) 제조·판매 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 지원 ※ (지원대상) 한의약 제품(한의약품, 한의 의료기기) 기업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	① 1단계: 해외시장 기초보고서 등 ② 2단계: 해외규격인증서, 해외지식재산권 등 ③ 3단계: 법인등록증 또는 투자계약서, 수출 실적 증명서, 마케팅 계약서·보고서 등	협약체결일로부터 ~ 2026.12.15. * 성과평가 등을 통해 1년 연장 가능

* (3단계 제외) 본 사업은 단계별(1~3단계) 지원 사업이나, 이번 공고에서는 1단계 또는 2단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

* 세부내용은 붙임2 [제안요청서] 확인 必

- (지원금액) 총 26백만원 이내

세부과제명	지원예산	자부담금
①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	○ 총 26백만원 - 1단계(최대 10백만원) 2개소 또는 2단계(최대 26백만원) 1개소 - 운영비, 여비, 인건비(신규채용에 한함) 등	총사업비 중 20% 이상 자부담(현금) 필수 편성 ('27년은 자부담 30%)

* 보조금은 과제 규모와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수행기관에 차등 지원 예정,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기관 수 변동 가능하며, 이에 따른 지원 예산도 총액 내에서 변동 가능

- (선정규모)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름
- (지원범위) 한의약 해외수출 지원사업 세부과제 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
 - 수행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*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지출해야 함
 - * 제안요청서의 예산지원 기준 참고(자산성 및 간접비성 사업비용 불인정)
 -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조금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사전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
 - 보조금 정산시 위탁정산회계법인을 통해 회계정산을 실시하여야 함
(사업 예산(각종수수료및사용료) 내 포함 필요, 국고+자부담 총액의 약 1%)
- (지원기간) 협약 체결일로부터 ~ '26.12.15.(화)까지
- (사업실적보고서 제출) '26.12.30.(수)까지
- 성과평가
 - (평가지점) 사업성과서 제출 이후 ⇒ 별도 통보
 - (평가지표) 사업계획서의 사업성과목표* 이행·달성 여부를 평가
 - * 평가지표 예시: 사업실적의 충실성, 목표 달성률, 예산 사용현황 등
 - (평가방법) 내·외부 전문가(5인 이내)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
 - (평가결과) 차년도 사업 승인여부 및 지원 규모 결정에 활용

○ (추진일정)

진행단계	추진일정	주요내용
↓		
사업 신청 및 접수	6.23.~7.7.	- 사업 공고 - 사업 신청(사업계획서 제출)
↓		
제출서류 확인·검토	7.8	-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검토
↓		
심사·평가	7.9	- 평가위원회의 신청기관 심사·평가 -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* 일정 변경 시 평가대상 기관에게 별도 안내
↓		
선정기관과 협의	7.10	-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조정 및 보완
↓		
수행기관 선정 통보	7.14	- 선정된 수행기관 별도 통보
↓		
최종 사업계획서 제출	7.16	- 협의 사항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
↓		
협약 체결 및 국고보조금 1차 교부	7.21	- 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- 보조금(1차) 교부신청서 접수 후 교부
↓		
사업 착수보고	7.23	- 승인된 사업계획 이행 일정 등 착수보고
↓		
중간보고 및 국고보조금 2차 교부	9월	- 사업 추진현황 등 중간보고 - 보조금(2차) 교부신청서 접수 후 교부
↓		
최종보고 및 평가	12월	- 사업 추진실적 최종보고 및 평가 -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(12.30) * 협약 종료(12.15)
↓		
보조금 정산	~'27년 2월	- 회계 검증 및 정산 - 보조금 잔액/불인정금액 환수

* 위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유의사항

-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법에 따른 책임이 따르며, 위탁정산회계법인의 집행·정산을 받아야 함
- 사업 신청기관은 공고를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, 미(未)숙지의 책임은 사업 신청기관에게 있음
- 필요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, 평가 결과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
- 제출된 모든 내용은 객관적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, 허위로 판명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선정을 취소함
-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관리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
- 수행기관은 사업 기간 동안 진흥원(복지부 의뢰 조사기관 포함)이 확인·조사를 위한 자료제출, 현장조사를 시행할 경우 협조해야 함
- 협약체결 즉시 사업 착수가 진행되며 사업추진 일정은 진흥원과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함
 - － 사업 착수보고,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(성과평가)에 반드시 참석하고, 발표가 요구될 경우 필히 진행

협약	사업비 교부 방식	사업비 정산
진흥원↔수행기관	1차, 2차로 나누어 교부 (수행기관 교부신청→진흥원 교부)	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진행

*** 사업비 교부 및 정산 방식 등은 세부과제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 예정**

- 수행기관이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수행기관을 사업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를

제한할 수 있으며, 사업 선정 후 수행 기간 또는 종료 후라도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저촉되는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가 발생 될 수 있음

- 수행기관은 진흥원과 협약체결 후 자부담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신청(보조금 신청 시 사업비 집행계획을 상호 검토 후 제출 요망)

* 수행기관은 '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'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

- 사업 관련 규정, 한의약의 해외진출 지원 사업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수행기관에게 있으며, 기타 세부사항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판단에 따름
- 수행기관은 증빙자료를 포함한 사업 수행 결과물을 사업 종료 후 관리기관(한국한의약진흥원)에 제출하여야 함
- 사업 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있음
-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이후에도 3년간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후 경과보고 및 협조 요청에 응하여야 함

□ 제출서류(제안요청서 참조)

- 사업공모 서류 제출공문
- 사업신청서
- 사업계획서
- 개인정보 제공·활용 동의서
- 서약서
- 공동수급협정서 및 대표자 선임계(컨소시엄 구성 시)
-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
-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
 - *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 - ** 제출서류가 부정·허위 작성으로 판명될 경우, 선정을 취소·해지하며, 해당 건의 사업비를 미지급·환수하며 이때 발생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출기관이 부담함
- 신용평가등급 확인서
- 기타(제안요청서 내 제출서류 확인)

□ 제출방법

- 제출기간: '26.6.23.(화) ~ '26.7.7.(화) 10:00
- 제출서류 구비 후 이메일 접수(global@nikom.or.kr)
 - － 파일명: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_신청기관명(hwp, PDF)
 - * hwp, PDF 2가지 파일 형식 모두 제출
 - ※ 접수 마감 시간 엄수, 제출완료 후 반드시 유선 확인
- 문의처

구분	연락처
① 한의약 제품 해외수출 지원	02-3393-4563

□ 선정방식

- 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「평가위원회」를 구성 (5인 이내)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최고 득점 기관을 선정
 - － (평가방법) 서류 → 대면평가(심사위원회)
 - *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 참조
 - － 각 배점당 위원별 최고·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, 총점이 기준 미달(70점 미만)인 지원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
- 공모 신청기관이 없거나 1개 기관 신청 시 재공고하되,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신청 시 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수행기관으로 확정
-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□ 기타사항

- 필요시 제안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및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신청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
- 사전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뤄질 수 있음